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20. 9. 11.>

(앞쪽)

제　　　　호

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

([ ]배아　[ ]체세포복제배아　[ ]단성생식배아)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기관장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ㆍ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질병관리청장　직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뒤쪽)

변경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